

투자신탁 설명서 변경

1. 투자신탁의 명칭

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주식투자신탁-자(H)

2. 시행일 : 2008. 1. 31

3. 설명서 변경 주요 내용: 이 투자신탁의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설명서를 변경함

■ 변경사유 - 수탁고 증대를 위해서 고액 설정 법인고객을 위한 신규 클래스 설정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약)	① <생략> 1. ~ 4. <생략> <신 설>	① <생략> 1. ~ 4. <생략> <u>5. 클래스 C2 수익증권</u> <u>6. 클래스 C3 수익증권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조(수익증권의 판매 기준)	① <생략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류^{가)}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자격^{나)}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^{다)}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클래스 A1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투자자격 제한없음^{마)}</td> <td>있음^{바)} (제 20-3 조 참조)^{사)}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1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투자자격 제한없음^{마)}</td> <td>해당사항 없음^{바)}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e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^{마)}</td> <td>해당사항 없음^{바)}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w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 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^{나)}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^{다)}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^{라)}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^{사)} </td> <td>해당사항 없음^{바)}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^{가)}	투자자격 ^{나)}	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^{다)}	클래스 A1 수익증권 ^{라)}	투자자격 제한없음 ^{마)}	있음 ^{바)} (제 20-3 조 참조) ^{사)}	클래스 C1 수익증권 ^{라)}	투자자격 제한없음 ^{마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클래스 C-e 수익증권 ^{라)}	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^{마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클래스 C-w 수익증권 ^{라)}	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^{나)}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^{다)}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^{라)}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^{사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① <생략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류^{가)}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자격^{나)}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^{다)}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클래스 A1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투자자격 제한없음^{마)}</td> <td>있음^{바)} (제 20-3 조 참조)^{사)}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1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투자자격 제한없음^{마)}</td> <td>해당사항 없음^{바)}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e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^{마)}</td> <td>해당사항 없음^{바)}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w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 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^{나)}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^{다)}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^{라)}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^{사)} </td> <td>해당사항 없음^{바)}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2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- 신규 매입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^{다)}</td> <td>해당사항 없음^{바)}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3 수익증권^{라)}</td> <td>- 신규 매입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법인^{다)}</td> <td>해당사항 없음^{바)}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^{가)}	투자자격 ^{나)}	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^{다)}	클래스 A1 수익증권 ^{라)}	투자자격 제한없음 ^{마)}	있음 ^{바)} (제 20-3 조 참조) ^{사)}	클래스 C1 수익증권 ^{라)}	투자자격 제한없음 ^{마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클래스 C-e 수익증권 ^{라)}	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^{마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클래스 C-w 수익증권 ^{라)}	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^{나)}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^{다)}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^{라)}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^{사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클래스 C2 수익증권 ^{라)}	- 신규 매입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^{다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클래스 C3 수익증권 ^{라)}	- 신규 매입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법인 ^{다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
종류 ^{가)}	투자자격 ^{나)}	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^{다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A1 수익증권 ^{라)}	투자자격 제한없음 ^{마)}	있음 ^{바)} (제 20-3 조 참조) ^{사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1 수익증권 ^{라)}	투자자격 제한없음 ^{마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-e 수익증권 ^{라)}	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^{마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-w 수익증권 ^{라)}	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^{나)}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^{다)}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^{라)}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^{사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류 ^{가)}	투자자격 ^{나)}	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^{다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A1 수익증권 ^{라)}	투자자격 제한없음 ^{마)}	있음 ^{바)} (제 20-3 조 참조) ^{사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1 수익증권 ^{라)}	투자자격 제한없음 ^{마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-e 수익증권 ^{라)}	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^{마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-w 수익증권 ^{라)}	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^{나)}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^{다)}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^{라)}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^{사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2 수익증권 ^{라)}	- 신규 매입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^{다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3 수익증권 ^{라)}	- 신규 매입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법인 ^{다)}	해당사항 없음 ^{바)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-3조(선취판매수수료)	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③ 클래스 C1 수익증권, 클래스 C-e 수익증권, 클래스 C-w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③ 클래스 C1 수익증권, 클래스 C-e 수익증권, 클래스 C-w 수익증권, <u>클래스 C2 수익증권, 클래스 C3 수익증권</u> 에는 선취판매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3조(환매수수료)	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1. < 생략 > 2. 클래스 C1 수익증권, 클래스 C-e 수익증권, 클래스 C-w 수익증권 가.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 나. 90 일이상 180 일미만: 이익금의 50% ③ < 생략 >	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1. < 생략 > 2. 클래스 C1 수익증권, 클래스 C-e 수익증권, 클래스 C-w 수익증권, <u>클래스 C2 수익증권, 클래스 C3 수익증권</u> 가.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 나. 90 일이상 180 일미만: 이익금의 50% ③ < 생략 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40조(투자신탁보수)	①< 생략 > ②< 생략 > ③< 생략 >	①< 생략 > ②< 생략 > ③< 생략 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<p>A. < 생략 > B. < 생략 > C. < 생략 > D. < 생략 > < 신규 ></p>	<p>A. < 생략 > B. < 생략 > C. < 생략 > D. < 생략 > E. 클래스 C2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9.00]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2.00]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0.60]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[0.30] F. 클래스 C3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9.00]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1.00]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0.60]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[0.30]</p>
부 칙2 (변 경)	< 신규 >	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[31]일부터 시행·적용 한다.